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3
----------	-------

발의연월일 : 2017. 12. 20.

발의자 : 김현권 · 김철민 · 표창원

안호영 · 남인순 · 이개호

이학영 · 홍문표 · 윤호중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의 설계기준이나 시방기준 등 기술기준은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기술지침으로서 항만 시설물의 성능 · 품질, 항만 건설공사의 안전성 · 경제성 확보와 직결됨. 그만큼 항만 기술기준은 신기술 등 항만 건설기술의 발전 추세 및 현장 애로 ·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업무를 모두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적기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공학, 해양수리학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이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 · 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

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후단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 3 신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의 제도 · 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 ·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 · 운영과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 ·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에 한정하여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잔여 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 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 매립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생 략) <p><u><신 설></u></p>	<p>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현행과 같음) <p><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라 기술기준을 구축하고 효</u> <u>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u> <u>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u> <u>다.</u></p> <p><u>1. 기술기준의 관리 · 운영</u></p> <p><u>2. 기술기준의 연구 · 개발 및</u> <u>보급</u></p> <p><u>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u></p> <p><u>4. 국제 기술기준의 제도 · 정책</u> <u>동향 조사 및 분석</u></p> <p><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p> <p><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u> <u>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u> <u>축 ·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u> <u>위탁할 수 있다.</u></p> <p><u>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u> <u>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u> <u>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u><후단 신설></u></p> <p>④ ~ ⑨ (생 략)</p> <p><u><신 설></u></p>	<p><u>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⑥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이 경우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에 한정하여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u></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제46조의3(잔여 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p>
---	--

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 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